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제언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송준걸 파트너 재무자문본부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전체 세수의 2% 내외 수준에 불과하나, 다양한 유형별 과세 내용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과 납세 협력 부담이 큰데,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부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제(이하 '상증세제')는 일부 계층에 집중된 부를 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경제적 균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로 많은 조세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가 축적되었다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반영되어 상증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제를 구비한 국가 대부분에서의 경험적 결과는 상증세제의 강화만으로는 부의 분산을 통한 경제적 기회 균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를 존치할지 또는 폐지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증세제를 폐지[2]하고 자본이득세제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증세제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들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본이득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상증세제 개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59면

2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스웨덴은 2005년에 폐지.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5 상속세와 증여세', 2017. 6 재인용

표 1. 우리나라 상증세 연도별 비중 및 금액 변동(1992~2017년)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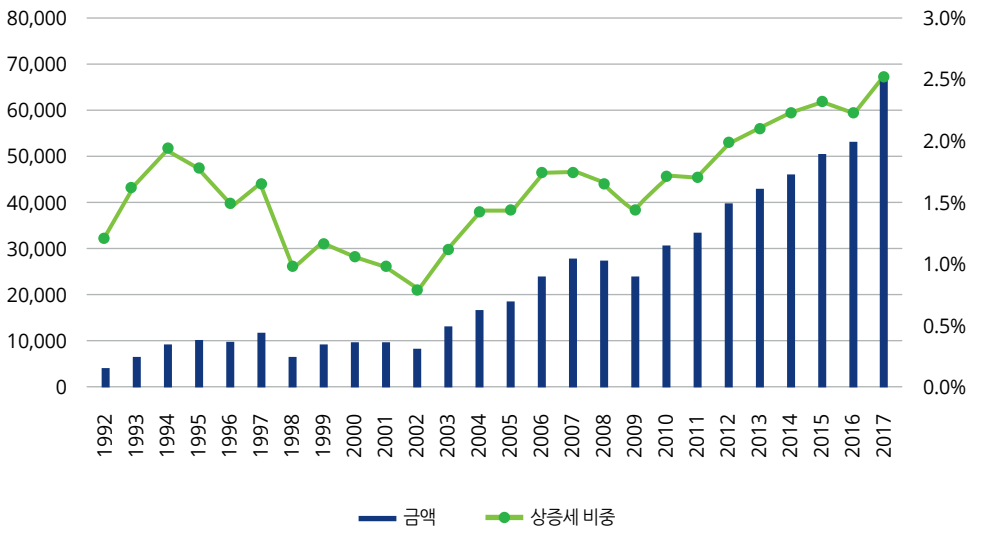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국세징수 실적 92~17'

상증세제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

상증세제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크게 다음의 4가지다.[3]

첫째, 상증세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식의 변화다. 전통적으로 상증세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공평주의였으나, 오늘날에는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가족관계 특히 혼인관계의 변화다. 가족 또는 혼인관계에서 민법 등이 개정되고, 더 나아가 증여를 포함한 상속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상증세제의 세수가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에 비해 징수비용이 높은 수준이다. 세무행정비용 vs 세수 비교론의 관점에서 상증세제의 개정(폐지 또는 경감)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넷째, 사업 승계를 저해하지 않는 세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상증세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행 상증세제의 주요 특징

낮은 세수 비중 vs 복잡한 세제 구조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증세의 전체 세수 내 비중은 2% 내외[4]로 낮으나, 최고세율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데 50%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2, 29면

4 OECD의 1965~2016년 상증세의 세수 비중은 약 1% 내외였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112~113면 참고

표 2. 각국의 상속·유산·증여세 최저·최고세율

(단위: %)

순위	구분	최저	최고	순위	구분	최저	최고
1	벨기에	3	80	11	영국	0	40
2	일본	10	55	12	스페인	0	34
3	덴마크	0	52.7	13	핀란드	0	33
4	**한국**	**10**	**50**	14	아일랜드	33	33
5	독일	7	50	15	터키	1	30
6	스위스	0	50	16	필리핀	5	20
7	룩셈부르크	0	48	17	폴란드	3	20
8	프랑스	5	45	18	브라질	0	8
9	미국	0	40	19	이탈리아	4	8
10	네덜란드	10	40	20	불가리아	0.4	6.6

조세 대상 37개국 중 상속세 및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포함 17개국[5]

출처: EY, '2017 전 세계 유산세 및 상속세 가이드(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7)'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다양한 자본 거래 역시 구체적인 증여 유형으로 과세되어 전환사채나 기타 이익의 증여 등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부분이 증여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합리성도 있다.

한편, 다양한 유형에 대한 과세 내용의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과 납세 협력 부담이 큰데, 비상장주식 등 재산가액의 복잡한 평가 방법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등이 그러한 사례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 불일치

과세 시기에만 차이가 있음에도 상속세는 유산 과세 방식[6], 그리고 증여세는 취득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데, 상속세의 유산 과세 구조는 상속인의 납세 능력을 초과하는 조세 부담을 발생시킨다. 또한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된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 및 일부 의제규정이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5 상속·유산·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지브롤터, 인도,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이다.

6 한국의 상속세제는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 공표된 이래로 징세 행정이 간편하고 조세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산세 과세 방식으로 과세해 왔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상속세법' 제정 당시 농업 중심의 경제였으나, 현재는 산업 중심의 경제로 변화되었다.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대가족 중심의 사회가 핵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고, 그 핵가족이 경제주체가 되면서 세분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상속세 과세는 세수의 증대보다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를 통한 국민의 경제적 기회 균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상속재산의 분산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증세제의 주요 문제점[7] 및 대안

상증세제에 관해서 기업 자산에 대한 완전포괄주의의 과도한 확장, 그리고 불합리한 재산 재평가 방식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가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와 상증세제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자산에 대한 완전포괄주의의 과도한 확장

기업 자산에 대한 완전포괄주의의 지나친 확장은 변칙증여에 유연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을 기할 수 있기는 하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후적 가치 변동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해 세법 체계상 혼돈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한 사후 가치 변동 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 부담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과 미성년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고율의 증여세로 과세하는 처사는 조세 형평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업 자산에 대해서만 비합리적인 재평가 방식을 적용

상증세제에 따르면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발견 또는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 방식은 비합리적 과세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20~30%의 일률적 할증이 이루어져 조세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 시가가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의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를 반영해 과세하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 상속 및 기업 활력 제고에 장애물이 된다.

가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가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도 현행 상증세제의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데, 만약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상이전 시점의 평가액보다 크다면 무상이전자의 보유 기간과 무상취득자의 보유 기간 동안의 총 자본이득 합계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가공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법의 정책적 규제 수단화

현행 '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함으로써 세법을 정책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또는 과도한 과세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식의 활용은 세법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7 상증세제의 주요 문제점은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 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6~10면과 안호영,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전환에 관한 연구: 전환에 따른 입법적 보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를 참고해 요약한 내용이다.

벗어나 제재 수단으로 세법 조항을 활용할 경우 조세법의 복잡성이 가중되며, 세법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게 된다.

대안 제시

앞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인해 상증세제의 대안으로서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이의 핵심은 실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상증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전환하려면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포괄주의 관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득세 과세 체계의 선제적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 상증세제의 높은 세율은 누락된 소득에 대한 청산 과세와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세 중과를 실현하려는 목적에 기인하므로, 상증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조세 복잡성의 경감과 조세 형평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본이득세제 적용 사례 비교[8]

자본이득세제의 방식에는 부의 무상이전과 유상이전 간 차이를 두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A유형)과 실현 여부에 초점을 두어 과세이연 하는 방식(B유형)이 있다. 캐나다(A유형)와 호주(B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과 관련해 과세이연의 인정 여부다.

자본이득세제의 기본적 과세 방식 및 구조

자본이득세제는 A유형, B유형으로 구분된다. A유형은 부의 무상이전과 유상이전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부의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을 모두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즉,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지면 타인에 대한 매매와 동일하게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B유형은 자본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부의 무상이전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승계되어 이익이 실현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본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타인에게 유상거래를 할 때 이익이 실현된다고 보아 그 시점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 검토: 캐나다(A유형)

캐나다는 1972년에 상증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대체했다. 조세부담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이고, 과세소득금액은 자본이득금액 전부가 아닌 이에 산입율(현재는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은 합산 과세되며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A유형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미실현 이익이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 시점을 확정한다. 따라서 유상이전과 동일하게 세제의 구성이 가능해 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실현 재산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현실적인 조세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 검토: 호주(B유형)

호주는 상증세제를 1979년에 폐지했고, 1985년에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했다. 조세부담자는 무상이전 또는 비적격 조건 증여의 경우 증여자,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자산취득가액을

8 자본이득세제 적용 사례 비교는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 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10~16면을 참고해 요약한 내용이다.

승계한 후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과세한다. 과세 소득금액은 자본자산의 처분수입금액과 취득가액 간의 차액이며,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은 합산해 과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 누진세 구조는 다르다.

B유형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을 과세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합리적이나,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실현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추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추적해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상증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상증세제를 자본이득세제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득세제가 상증세제를 흡수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체계 전반이 세제 개혁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가업승계세제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 방식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세제의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자본이득세제 도입을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소득세제 내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제 과세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다. 소득세제 과세 체계 내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고려해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System)[9] 를 도입해 자본이득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소득세제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궁극적으로 세제 개혁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전적인 효과 분석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표 3.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도입 연도	1992년	1993년	1991년	1987년
자본소득세율	28	29	30	28, 43
근로소득세율	28~47.5	29.2~52.2	31.5~56.5	38.1~59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KERI 정책 제언 13-31, 현진권, 2013. 10, 7면

9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세의 형평성을 강조했던 북유럽 국가들이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원소득세제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낮은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자본소득과세는 저축과 투자의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높은 한계세율은 자본 축적 및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비판 제기). 이원소득세는 법률상 누진적 세율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본소득 간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인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 검토

현행 상증세제의 과세 체계를 비롯한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해 더욱 장기적인 안목 내지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10]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면 재산의 저량화 및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원활해지도록 장기적으로 상속세제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되 이익의 실현은 이를 처분할 때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장기적 개선 방안은 현실적인 이익 실현 시에 과세하는 B유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과세 시점과 이익 실현 시점을 일치시켜 인위적인 이익 실현 간주로 인한 납세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세행정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나, 첨단화된 국세청 종합전산망 등 전자행정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조세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B유형 적용으로 인한 상속 후 사후관리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12, 134면

단기적인 정책 제언

한편, 한국은 자본이득세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제도가 현재 매우 미흡해 상증세제 폐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증세제 체계 개선을 위해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고,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각종 공제액의 현실화를 위해서 물가지수연동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지수연동법이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의 조정 지수에 비해 일정 한도 이상 상승할 경우 각종 공제액 및 면세액을 다음 해부터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는 제도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세율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당시 정부에서 상증세의 적정한 세 부담 조정, 국부의 해외 유출 완화, 그리고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상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적이 있다. 즉, 정부 입법의 사전준비를 통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 개정 사전 검토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했었으므로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세율 인하 입법의 재시도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생전에 젊은 세대로 증여하기가 용이하도록 제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상증세의 조세 부담을 없애거나 경감해서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해 고령자의 보유 자산을 젊은 세대로 원활히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현행 가업승계세제를 확대 및 개편해 일정 규모 이하의 대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가업승계세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고용, 기업, 기업재산, 지분)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의 85% 또는 100%를 공제(단, 임대 및 투자 자산 등 비사업용 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은 제외)해[11] 왔으나, 2014년 12월 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11 박종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 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57면

대규모의 상속세 공제 제한, 급여 총액 유지 규정의 세분화 개정, 기업재산과 관리재산의 개념 재정립(관리재산의 범위 확대) 등이 이뤄져 과거에 비해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공제 요건이 독일에 비해 더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급여 총액 유지 조건 등의 필요성 심사 요건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기업 중 필요성 심사를 통과한 일부 기업에는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면서

한 나라의 조세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그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상증세제는 그 명칭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 법률적 배경, 다른 세목과의 관계 또는 세무 행정의 수준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니며, 그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조세 제도의 도입 및 적용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상증세의 기능이나 역할, 세제의 내용 등은 부의 편중 정도나 그 축적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어떤 것이 낫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상증세는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 없이 조세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상증세의 강화를 통해 부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과세 체계를 비롯한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해 더 장기적인 안목 내지는 새로운 각도에서 상증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증세제가 창의성 있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고, 개인의 근로 의욕과 기업의 경영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부의 분산을 도모하고,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에 부응하는 중립적인 세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일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들이 상증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 제도적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 및 여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상증세제의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부의 집중을 억제해 경제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는 세제로서의 사회정책적 의의와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조세 공평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있음을 고려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이득세제 및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한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이들 국가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Contact

송준걸 파트너

재무자문본부
02-6676-1680
joosong@deloitte.com